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동구 ○○○○○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훈계대상자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5. 1. 1.부터 2016. 7. 11.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과에서 ‘동구 ○○○○○○○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동구○○○○○○○ 건립과 관련하여 영상·음향 장비 및 상영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동구 ○○○○○○○○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6. 1. 21.부터 2016. 3. 11.까지 (주)○○(대표 ○○○, ○○○)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2015. 12. 7. 발주)’으로 계약을 체결(총 사업비 710,878천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하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용역·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15-17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① 물품·용역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② 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¹⁾로써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창의성이나 고도의 전문성 혹은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능력(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물품·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²⁾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통신장비 구축 물품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시관·박물관 등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안전성을 요하

1) ①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②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13. 일부개정] 개정사유서 ◇ 주요내용. 가항에 명시되어 있음

는 전시기설 설치 사업이 아닌 방송스피커 설치, 컴퓨터 및 모니터 설치 등 단순한 물품 구입·설치 사업임에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아래의 [사진]과 같이 스튜디오 시계, SSD메모리, 노트북, 헤드셋, 테이블 및 의자, 수납장, 강의데스크 등 단순 물품구입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방식 등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특별한 기술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물품구입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더구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 제안된 납품장비 중 LED(42") TV외 10종에 대한 제품단종 및 수급일정 차질 등을 사유로 실정보고를 통해 동등이상의 대체품으로 교체를 승인하였다.

살피건대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서 작성 안내 3. 제안서의 효력”에 따르면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 효력을 가지며,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제품 외에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제안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상대자에 제안서의 신뢰성 및 평가의 객관성 등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진] ○○○○○○○○ 물품 구매 현황

	
스튜디오 시계(벽걸이형)	노트북
	
책상 및 의자	마이크, 무선마이크, 배터리 등

※ 자료근거 : 광주광역시 동구(○○○○과) 준공 제출자료

그 결과 동 사업의 총 사업비(741백만원)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계약방식³⁾ 대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여⁴⁾ 약 50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⁵⁾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 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방식(예산낙찰률 87.745%) 650백만원

4)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률 94.379%, 700백만원

5) 위 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센터 구축사업의 선례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는 확인자 의견에 따라 ○○시 및 ○○군 ○○○○○○○○의 계약 사례를 확인한 바, 평균 낙찰률이 적격심사방식보다 낮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함

[주의]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